정　　관

주식회사 어포인트오브뷰

A Point of View Co., Ltd.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어포인트오브뷰**(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A Point of View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저술업 및 원고 집필업
2. 원고 대필, 윤문, 교정·교열 및 편집 대행업
3. 일반 서적 출판업
4. 전자책 및 전자출판물 제작·유통업
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6.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 카피라이팅, 브랜드 스토리 및 마케팅 콘텐츠 기획·제작업
8. 광고 대행업 및 광고물 기획·제작업
9. 출판물·홍보물·사보·뉴스레터 기획 및 제작 대행업
10. 시나리오, 극본, 방송 원고 및 웹소설 집필업
11. 영상·오디오 콘텐츠(오디오북, 팟캐스트 포함) 기획 및 제작업
12. 온라인 플랫폼 및 뉴스레터를 통한 콘텐츠 제공업
13. 저작권, 출판권 및 2차적저작물에 관한 관리·중개·라이선싱업
14. 글쓰기 및 창작 관련 강연, 강의, 워크숍 및 교육 서비스업
15. 출판·콘텐츠·기업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문 및 컨설팅업
16. 문화예술 행사, 북토크, 전시 기획 및 운영업
17. 도서, 문구, 굿즈 및 관련 상품의 기획·제조·도소매업
18.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9. 인쇄물 기획 및 인쇄 중개업
20. 사진 촬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업
2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출장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pointofview.co.kr)에 게재한다.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주(자본금 금 2,000,000원)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불발행)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의 양도제한)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 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유치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주권(주권이 발행된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다음 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날로부터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의 주소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3장 사채

제15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8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서면결의)

①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5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감사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 회사는 감사를 1명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9조 (보선)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대표이사)

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가 2명인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1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이사회가 없는 경우의 특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상법」 제383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40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35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계산

제3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밖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제4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부칙

제43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5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의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46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인수)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200주 전부를 1주당 금 10,000원에 인수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어포인트오브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년 [ ]월 [ ]일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수 주식 수	날인
발기인	[ ]	[ ]	[ ]	200주	(인)